

#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

제정	2003. 3. 8.	규칙 제392호
개정	2003. 5.12.	규칙 제393호
	2010. 3. 5.	규칙 제525호
	2012. 1. 2.	규칙 제586호
	2015. 2. 3.	규칙 제659호
	2020.11.23.	규정 제828호
	2021. 8.13.	규정 제85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상·벌, 학생생활 및 학생지도, 학생증 발급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03., 2021.8.13.>

**제2조(적용범위)** 학생지원에 관하여 따로 정해진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2장 위원회

**제3조(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활동의 지도육성과 학생상벌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2.03>

② 위원회는 교무처장, 훈련학생처장, 사무국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훈련학생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0.11.23., 2021.8.13.>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훈련학생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2021.8.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제4조(학생지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13.>
3. 학생회 각종 조직에 관한 사항
4. 학생회예산,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
5.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6. 특별포상에 관한 사항
7. 징계에 관한 사항. 다만, 제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무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1.8.13.>
8. 상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2.03>
9. 삭제 <2015.02.03.>
10. 삭제 <2015.02.03.>
11.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상벌

**제5조(상벌절차)** 학생의 상벌을 행함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확정한다.

**제6조(상벌의 기록)** 상벌은 상벌대장 및 학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정학 이하의 징계는 훈련학생처장의 요청에 따라 학적부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제7조(이중상벌 금지)** 상벌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벌에 대한 의견 청취)** 상벌 심의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나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8.13.>

**제9조(상벌 통보)** ① 징계를 위한 위원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훈련학생처장은 확정된 포상 및 징계처분을 해당 부서장 및 학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2021.8.13.>

### 제1절 포상

**제10조(포상의 종류 및 대상)** 포상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우등포상 : 당해 학년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그 평균평점이 3.8이상인 자는 우등생으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졸업포상 : 졸업을 하는 자로서 재학기간중 타학생의 모범이 된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우수졸업생으로 추천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편입학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8.13.>

종 류	수 상 대 상 ( 기 준 )
최우수상	졸업석차 1위인 자
경기력상	①올림픽대회 입상자 ②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 ③아시아경기대회 입상자 ④U대회, 동아시아대회 입상자 ⑤ 훈련계획에 따른 체력측정평가결과 향상도가 현저한 자 ⑥ 그 밖에 국제대회 입상자 및 특별히 인정하는 자
공로상(총장 표창장)	학교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
우등상(총장 표창장)	평균 평점 3.8이상인 자

3. 특별포상 : 재학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된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모범생으로 포상할 수 있다.

종 류	수 상 대 상 ( 기 준 )
모범체육상(총장 표창장)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 우수성적을 거두어 국위를 선양한 자 또는 평소 체육지도자로서 소양이 뚜렷한 자
기타 모범상(총장 표창장)	학교발전 및 명예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4. 입학포상 : 최우수성적으로 입학한 신입생에게 입학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의 추천) 포상의 추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3.>

종 류	추천기한	구비서류	추천자
우등포상	매년 1월	별지1호서식의 추천서	학과장
졸업포상	최우수상	"	"
	경기력상	"	훈련학생처장
	공로상	"	교무처장
	우등상	"	학과장
특별포상	모범체육상	수시	훈련학생처장, 학과장
	기타모범상	"	학과장
입학포상	입학식일자 10일전까지	"	"

제12조 삭제 <2021.8.13>

## 제2절 징계

제13조(징계의 종류 및 기간 등) ①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한다.

② 근신은 3일 이상 7일 미만으로 한다. 단, 근신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와 훈련학생처장의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23.>

③ 유기정학은 7일 이상 14일 미만으로 하고 무기정학은 14일 이상으로 한다. 단, 정학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해제일까지 학생으로서의 권리는 정지된다.

④ 재학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다만, 가중처벌의 징계범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4조(징계요청 및 구비서류 등) ① 징계의 요청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② 징계 요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건 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 1부.
3. 그 밖의 참고서류

③ 각 학과장은 징계사유가 발생 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생활관 수칙 위반자는 생활관장이 요청할 수 있다.

④ 학생지도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징계요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징계 요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를 심의하고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8.13.>

제14조의2(징계처분의 재심의)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징계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징계처분 결정 후 중대한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본조 신설 2021.8.13.]

제15조(무기정학의 해제) 훈련학생처장은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으로부터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무기정학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2021.8.13.>

**제16조(징계사유 및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징계에 처한다. <개정 2021.8.13.>

항별	징 계 사 유	최초징계범위
1	생활관 제반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근신 이상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무상한 자	"
3	본 대학이 설정한 대회출전규정 제12조에 관련된 자	"
4	본 대학이 설정한 체력기준에 지극히 미달한 자	"
5	부정시험자로 조작, 제공하다가 적발된 자	유기정학 이상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무기정학 이상
7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초래케 한 자	"
8	학교 내에서 정치활동을 하거나 할 목적으로 조직이나 선동을 한 자	"
9	흡연을 하였거나 본 대학에 허가 없이 음주한 자	"
10	허가 없이 10인 이상의 집회를 주동한 자	유기정학 이상
11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게시물을 부착한 자	근신 이상
12	폭력을 행사한 자	유기정학 이상
13	성희롱을 한 자	유기정학 이상
14	인권 침해를 한 자	근신 이상
15	그 밖에 학칙을 위반한 자나 학생의 본분을 위배한 자	근신 이상

**제17조(봉사명령)** ① 제16조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누우치는 정도가 뚜렷한 자에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 또는 봉사명령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② 봉사명령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무기정학 이상 해당자 : 30일 이상
2. 유기정학 이상 해당자 : 20일 이상
3. 근신 이상 해당자 : 10일 이상

**제18조(징계대상자 퇴학제한)** 제1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징계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퇴학을 할 수 없다.

**제19조(자격제한 및 수혜금지)**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생회 각종 간부직책 및 장학금 등 그 밖의 수혜 혜택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제4장 학생단체 및 학생지도

**제20조(단체의 목적)** 학생회 운영상 부합되는 목적을 가진 단체(동아리)를 두어 건전한 학생활동으로 상호 친목과 협동심을 고취시키며 면학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1조(단체의 규모)** 신규 단체의 규모는 최소 10명 이상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 목적이 동일할 경우 통합 등을 통하여 동아리의 난립을 예방하며 건전한 활동이 되도록 한다.

**제22조(단체조직 및 승인)** 학생회 산하단체(동아리)를 조직할 때에는 새 학년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단체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학생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학년은 1학기 홍보 후 1학년 2학기에 등록한다.<개정 2020.11.23.>

1. 단체승인 신청서 1부

2. 지도교수 취임 승낙서 1부
3. 서약서 1부
4. 회원명단 1부
5. 단체회칙 1부
6. 활동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제23조(집회·행사허가원 제출 절차)** ① 집회·행사를 하고자 하는 단체는 집회·행사허가원을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3일 이전에 훈련학생처로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23.>

② 단체의 집회 및 행사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집회 및 행사에는 지도교수가 반드시 참여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제24조(비승인 단체의 구성 및 승인 단체의 활동금지)** ①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의 구성은 이를 금지한다.

② 승인된 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총장은 그 승인을 취소하고 관계자는 학칙과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학생단체의 회칙 개정 등의 신고)** 학생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이 개정되거나 임원이 개선된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사항)** 위 이외의 동아리활동의 승인 및 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제5장 학생증 발급

**제27조(학생증의 발급)** ① 총장은 학년 초 등록을 마친 학생에게 학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02.03>

② 학생이 학생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훈련학생처에 학생증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제28조(발급권자)** 학생증은 총장명의로 발급한다.

**제29조(유효기간)**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졸업 시까지로 한다.

**제30조(무효 및 회수)** 학생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15.02.03>

1.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을 때
  2. 당해 학생이 졸업, 휴학, 퇴학 또는 제적되었을 때
  3. 기록 첨부 날인사항을 임의로 정정하거나 또는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훼손 하였을 때
- <개정 2015.02.03>

**제31조(반환)** 학생이 졸업, 휴학, 제적 등 학생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는 학생증을 훈련학생처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

**제32조(학생증의 소지)** 학생은 항상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직원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제33조(장부 비치)** 학생증 발급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부 칙(제392호, 2003. 3. 8.)**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시행 이전 한국체육대학교학사운영규정(2001. 9. 1. 제339호)에 의거 시행한 학생 상·벌(포상·징계), 장학, 학생생활 및 학생지도, 학생증발급 등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제393호, 2003. 5.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3. 1.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 **부 칙(제525호, 2010. 3. 5.)**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586호, 2012. 1.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659호, 2015.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훈련처장” 은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학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제6조 중 “교학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제11조 중 “훈련처장” 은 “훈련학생처장” 으로 “교학처장” 을 “교무처장”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학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제15조 중 “교학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교학처” 는 “훈련학생처”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학생과” 는 “훈련학생처” 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교학처” 는 “훈련학생처” 로 한다.

제31조 중 “교학처” 는 “훈련학생처”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훈련처장” 을 “훈련학생처장” 으로 한다.

### **부 칙(제850호, 2021. 8.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상대상자 추천서

학과		전공(종목)	
성명		학번	
생년월일		연락처	- -
<p>&lt;추천요지&gt;</p>			

상기 학생을 ( )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 성명 (인)

한국체육대학교총장 귀하

